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학교

# 일학습병행(학위연계형) 신입생 모집 요강



한국공학대학교  
TECH UNIVERSITY OF KOREA

## 목 차

1.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1
2. 전형방법 및 사정원칙 .....	2
3. 전형일정 .....	5
4.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6
5. 합격자발표 및 등록안내 .....	8
6. 지원자 유의사항 .....	8
7. 전형료 및 등록포기 안내 .....	11
#. 붙임 : 관련서식 .....	<서식1~11>

# 1.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 지원 자격

- 1) 본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와 학습기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입학 기준일 기점으로 **입사일이 1년 이내인 자.**  
(단, 2022년도 직업계고교(특성화고교, 마이스터고교)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기업에 선취업하여 2022년 4/4분기, 2023년 1/4분기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입학일은 2024년 3월 2일, 입사일은 4대 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 2) 재교육 과정에 따른 학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학력 및 지원기준
신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li> <li>(※ 특성화고교, 마이스터고교, 인문계고 졸업(예정)자 모두 가능)</li> </ul>

- 3) 본교에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 **신입학 예비훈련 및 기초능력평가(지필고사, 심층면접)에 참여가 가능한 자**

## ■ 모집단위 및 인원

구분	모집유형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모집학과	계약형태	학위종별	학습구분	
신입학 (4년)	일학습병행 학위연계형 계약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재교육형	공학사	주말	80명
		로봇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재교육형	공학사	주말	42명
계						122명

- 모집자격(산업형 과정)

모 집 단 위		모 집 자 격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SW개발_L5, 전자기기하드웨어개발_L5
	로봇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제어설계_L5, 기계생산관리_L5

- 1) 상기 모집학과는 협약업체의 개설수요에 의한 개설 예정학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재교육을 조건으로 선발하는 계약학과임.
- 2) 모집인원은 일학습병행 훈련인원 심사결과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학과별 최종 등록인원이 대학이 정한 계약학과 개설기준(13명)에 미달할 경우 해당 학과는 개설되지 않을 수 있고 **학과개설 여부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됨.**

## ■ 관련문의

학과	연락처
컴퓨터전자공학과	031-8041-1247 (담당자: 임아라)
로봇메카트로닉스공학과	031-8041-1248 (담당자: 강다연)

## 2. 전형방법 및 사정원칙

### ■ 전형방법

#### 1)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구분	예비훈련 참여 및 기초능력평가		
	지필고사	심층면접	계
전형방법	60%(60점)	40%(40점)	100%(100점)

#### 2) 합격자 사정기준

- 입학지원자 중 예비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능력평가(지필고사 및 심층면접)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의 합산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에는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함.

#### 3) 예비후보자 선정

- 예비후보자는 모집단위별 총 취득점수 순으로 합격자를 제외한 모집인원의 1배수를 선정하고, 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입학자격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에 의하여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4) 불합격 처리 : 예비훈련 및 기초능력평가(지필고사 및 심층면접) 결시자

5)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면접점수 우수자
- 2순위 - 지필고사 성적 우수자
- 3순위 - 면접점수 영역별(전공및직무적합성, 인성및잠재력, 일학습병행참여의지 순) 우수자
- 4순위 - 소속 학습기업의 재직기간(경력일수)이 많은 자  
(※원서접수 종료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산정함)

## ■ 전형요소 및 반영배점

1) 기초능력평가(지필고사 및 심층면접)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기초능력평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계
지필고사	심층면접			
기초수리능력	전공 및 직무적합성	인성 및 잠재력	일학습병행 참여의지	100% (100점)
60%(60점)	20%(20점)	10%(10점)	10%(10점)	

※ 기초능력평가 반영 점수의 환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예비훈련은 2일간 진행되며, 2일 모두 참여해야 정상적으로 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것으로 판단함.**

● 예비훈련 및 기초능력평가

- 수험생은 반드시 1일차 예비훈련과 2일차 기초능력평가에 참여해야 함
- 1일차 예비훈련은 **일학습병행 설명회(OT)**와 **학과별 예비훈련(수업)**으로 진행
- 2일차 기초능력평가는 **지필고사(기초수리능력)**와 **심층면접**으로 진행

3) 심층면접

- 심층면접은 구술면접으로 아래의 평가영역과 평가기준에 의하여 시행함.
- 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배점	비고
전공 및 직무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기초능력 및 전공전문성</li> <li>■ 전공관련 특기사항 및 재능보유</li> <li>■ 전공 및 진로와 연계한 담당 직무의 적합성과 발전가능성</li> </ul>	20	전공이해능력 전공전문성 전공 및 직무 적합도
인성 및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 능력</li> <li>■ 성실하고 긍정적인 태도 및 공동체 의식</li> <li>■ 창의적 비전 및 특기사항</li> <li>■ 자기주도적·창의적 발전가능성</li> </ul>	10	성실성 논리성 공동체의식 발전가능성
일학습병행 참여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학습병행 제도의 이해와 학습근로자로서의 직무수행 태도 및 교육훈련 참여의지</li> </ul>	10	일학습병행 이해 및 참여의지
계		40	

## ■ 미등록 충원합격자 선발

- 1)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입학자격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을 취소하고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 2) 미등록자 발생에 대한 충원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www.tukorea.ac.kr) 공고 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
- 3) 타 대학 등록 후 본교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본교에 등록하여야 함.
- 4) 전화로 개별 통보하는 충원합격 발표 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 까지 시도하여 연락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 예비후보자에게 합격이 통보되오니 반드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대기하여야 함.

###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및 내용	비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23.12.7.(목) 10:00 ~ 12.27.(수) 15:00	· 원서접수 : 온라인 ( <a href="http://www.jinhakapply.com">http://www.jinhakapply.com</a> )  · 서류제출 : (15119)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65, 한국공대 제2캠퍼스 미래인재관 707호 일학습병행 교학팀	· 원서 접수 시 <b>구비서류(12종)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b> · 구비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전형료 : 65,000원(수수료 별도)
신입학 예비훈련	1일차: 2024.1.7.(일)  2일차: 2023.1.13.(토)	· 1일차 : <b>예비훈련(5H)</b> · 2일차 : <b>기초능력평가 (기초수리능력, 심층면접)</b> ※ 예비훈련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	· 1일차: 비대면(실시간 온라인) · 2일차: 대면평가(시험장소 별도공지) ※ <b>예비훈련과 기초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시 불합격 처리</b>
합격자 발표	2024.1.19.(금)	· 본교 홈페이지 ( <a href="http://www.tukorea.ac.kr">http://www.tukorea.ac.kr</a> )	· 개별 연락하지 않음. · 소속 기업으로 e-mail로 발송
입학자격서류 제출	2024.1.19.(금) ~ 1.31.(수) 15:00	· 입학자격서류 - 재직증명서 - 표준훈련 근로계약서 - 일학습병행 참여서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b>입학자격서류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b> · 입학자격서류(7종) 제출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은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등록금 납부	2024.1.19.(금) ~ 1.31.(수) 15:00	· 본인부담금 : 하나은행	· 가상계좌에 <b>오후 3시 이전 입금</b> · 합격확인 및 본인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 가능 ※ 기한 내 <b>미납 시, 합격취소 처리</b>
1차 총원 합격자 발표	2024.2.1.(목) 이전	· 홈페이지 또는 개별 전화통보 ( <a href="http://www.tukorea.ac.kr">http://www.tukorea.ac.kr</a> )	· 소속 기업으로 e-mail로 발송
1차 총원 등록금 납부	2024.2.1(목) ~ 2.6.(화) 17:00	· 본인부담금 : 하나은행	· 상기 등록방법과 동일 · 입학자격서류는 해당 등록기간에 제출
총원합격자 선발 및 등록 기간	2024.2.13(화) ~ 2.23.(금) 17:00	· 홈페이지 또는 개별 전화통보 ( <a href="http://www.tukorea.ac.kr">http://www.tukorea.ac.kr</a> )	· 소속기업 메일 발송, 등록방법 및 입학서류 제출은 상기와 동일 ※ 미등록 총원기간 중 총원합격자는 본교에서 <b>통보(공지)한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b>

※ 전형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모집인원 미달 시 총원합격자 선발기간 내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음.

## 4.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 입학원서 지원서류

- 접수기간 : 2023. 12. 7.(목) 10:00 ~ 12. 27.(수) 15: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http://www.jinhakapply.com>)으로 접수하며, 수험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입학원서 구비서류(12종)는 산업체가 취합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접수처 : (15119)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65, 한국공학대학교(제2캠퍼스) 미래인재관 707호 일학습병행 교학팀, TEL) 031-8041-1247,1248

구분	제출서류	수량	비고
학생 (학습 근로자)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온라인 접수( <a href="http://www.jinhakapply.com">http://www.jinhakapply.com</a> ) 후 출력 가능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단,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 사본(원본지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
	③ 고등학교 최종 생활기록부 (전학년 성적증명 포함)	1부	
	④ 내신등급 확인서	1부	· 본교 소정양식 · 예·체능교과 제외 전체 석차등급 평균
	⑤ 일학습병행 예비훈련 참여 확인서	1부	· 본교 소정양식
	⑥ 재직증명서 또는 채용약정서	1부	· 채용 예정자는 채용약정서 제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본교 소정양식
산업체 (학습 기업)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2부	· 본교 소정양식 · 학교 및 기업용 <b>2부</b> 작성 (※직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② 계약학과 입학추천서	1부	· 본교 소정양식 · 모든 항목 상세하게 작성 필요 · 학과명을 정확하게 기입, 담당업무, 추천사유 등은 <b>지원학과에 맞는 내용</b> 으로 작성 · 재직기간 작성 예)2024.3.1.~현재 (00개월) · 서류 하단의 <b>기업명-대표자명-대표직인 필수</b>
	③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사업체 전체 가입인원수 포함)	1부	·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사이트 ( <a href="http://minwon.nhis.or.kr">http://minwon.nhis.or.kr</a>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기업현장교사 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 본교 소정양식으로 작성 · 학력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 입학자격 제출서류 (합격자발표 후 제출)

- 제출기간 : 2024. 1. 19(금) ~ 1. 31(수) 15:00까지

구분	제 출 서 류	수량	비 고
학생 (학습 근로자)	①재직증명서	1부	· 채용약정서 제출자에 한함
	②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입이력 전체 포함)	1부	·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사이트 ( <a href="http://minwon.nhis.or.kr">http://minwon.nhis.or.kr</a> ) · 본인 <b>가입이력 전체가 표시</b> 되도록 발급
	③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본인)	1부	· 참고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a href="http://www.4insure.or.kr">www.4insure.or.kr</a> ) · <b>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b> · 기초수급자·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④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 '23년 소득 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출 · <b>직인 누락 시 접수 불가</b>
산업체 (학습 기업)	①일학습병행 참여서약서	1부	· 본교 소정양식
	②표준훈련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일학습병행 사업 양식 준수 · 계약기간 : 2024.03.02.~2028.02.28.(4년) ·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예비 학습근로자 현황만 표기)	1부	· 일학습병행 사업 양식 준수 · 참고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a href="http://www.4insure.or.kr">www.4insure.or.kr</a> )

※ 합격자는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입학자격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5.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 ■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 1) 합격자 명단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표일을 사전에 숙지하고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 2) 합격자는 지정된 일시에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등록금(개인부담금)은 반드시 지정기간 내에 가상계좌로 납부 하여야 함.
- 3)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을 취소함.

## 6. 지원자 유의사항

### ■ 원서접수 유의사항

- 1) 원서접수가 완료된 경우 지원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전형료도 반환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본교 입시정책에 의거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2) 구비서류 미비로 전형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입학자격서류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합격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제출 시 접수여부는 개별 연락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3) 입학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입력오류, 구비서류 지연도착, 주소 및 연락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전형기간 중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5) 전화로 통보하는 **충원합격자 발표** 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까지 시도하여 연락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 예비후보자에게 합격이 통보**되오니 반드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대기**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 일학습병행학부 교학팀으로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6) 입학 전형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지원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7)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 시 일학습병행 합격은 자동 취소됩니다.
- 8)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9) 본 모집요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학습병행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 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0호(전부개정 2020.9.29.)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은 필요 시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학습근로자에게 자부담시킬 수 있으며 학습근로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 산업체 퇴직관련 유의사항

- 1)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 교육경비 부담을 전제로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입니다.
- 2) 계약학과 입학 후 산업체 등에서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제2항)
- 3)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권역 외)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 부담금 등은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됩니다.)

- 4) 상기 3)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 학생 신분 유지는 다음 항목에 한합니다.
  - (가)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 (나)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 일학습병행 진행이 가능한 경우
- 5)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등 고용보험공단 발급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생 신분 유지에 해당하는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재직조사관련 유의사항

- 1) 입학 후 재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월 **재직조사 시**에 반드시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적** 처리됩니다.  
(※매학기 개시전월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제출/  
2학기 개시전월 :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제출)

##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1) 복수지원 금지사항
  - 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등록된 자(충원합격 통보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는 지원 금지
- 2) 이중등록 금지
  - 복수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본교 입학 이후라도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 7. 전형료 및 등록포기 안내

### ■ 전형료

구 분	신 입
금액(원)	65,000

※ 전형료 납부 : 원서접수 시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접수 불가

### ■ 전형료 환불 안내

- 1)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 입학전형료 반환은 관련 법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및 본교 입시정책에 의해 반환하며, 반환사유는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3)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전형료 환불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는 전형료를 전액 환불  
(접수 수수료 5,000원은 본인부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환불혜택 없음)
- ※ 단,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관련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등록포기

- 1)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을 취소합니다.
- 2)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 신청서(본교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학과 미개설로 인한 등록금 환불은 별도 시행)
  - 등록금 환불기간 : 2024. 1. 22(월) ~ 2. 23(금) 16시 까지
  - 기타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처리함.



<서식2>

# 계약학과 입학추천서

## 1. 인적사항

지원학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2. 근무사항

근무부서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상세히 기술)
		(   년   개월) <small>*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small>	

## 3. 산업체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 · 종목	회사전화번호	회사규모 (상시근로자수)

## 4. 업무담당자 (HRD담당자)

근무부서	성명	직위	전화번호 (회사번호/핸드폰번호)	FAX번호
			Tel : H.P :	

## 5. 추천사유

기준과 동일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사람을 한국공학대학교 2024학년도 일학습병행(계약학과) 입학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_\_\_\_\_

대표명 : \_\_\_\_\_ (직인)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 ※ 재직기간은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회사규모는 건강보험사업장적용통보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담당자는 서류제출 및 고용보험 환급신청 등 업무처리를 해줄 담당자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본인 불가)

## 내신 등급 확인서

학 교 명		학 과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연락처 )			

내 신 등 급	
용 도	2024학년도 일학습병행(학위연계형) 과정 지원을 위한 성적 확인용

※ 내신등급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예·체능 교과 및 이수 or 미이수 만을 평가하는 교과는 제외) 평균 석차등급(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입니다.

단, 졸업자는 전 학년(3학년 2학기까지) 평균 석차등급을 반영 합니다.

[ 평균 석차등급 =  $\sum(\text{과목별 석차등급} \times \text{과목별 이수단위}) \div \sum(\text{과목별 이수단위})$  ]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담당교사 : \_\_\_\_\_ (인)

학 교 장 : \_\_\_\_\_ (인)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 일학습병행 예비훈련 참여 확인서

학습기업명			
지원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한국공학대학교 일학습병행 통합공동훈련센터의 『2024년도 예비훈련』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2024학년도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학사신입(4년) 과정에 대한 학습근로자 모집 전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を 불허합니다.
- 예비훈련 및 기초능력평가(기초수리능력, 심층면접) 미응시 또는 탈락 시 입학을 불허합니다.
- 본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제출 시 예비훈련 참여가 불가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 (서명)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 채 용 약 정 서

- 학습기업명 :
- 채용예정일 :
- 채용예정 학습기업 정보

사업체 명	대표자명	사업체 주소	전화번호	업종(직종)

- 예비학습근로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서명 (자필작성)

※공간이 부족할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위 예비학습근로자는 입학전형 불합격 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할 예정이며 예비학습근로자에게 채용 후 근로조건(급여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체 명 :

대 표 자 : \_\_\_\_\_ (인)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 일학습병행 참여 서약서

\_\_\_\_\_ 기업명 (은)는 한국공학대학교 일학습병행 통합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하는 일학습 병행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 아 래 사 항 -

1. 학습기업의 훈련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일학습병행 운영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3.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시간표에 따라 현장교육훈련을 철저히 실시한다.**
4.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에 대한 변경 사항(훈련시간, 훈련장소, 기업현장교사 등)이 발생할 시 사전에 한국공학대학교 일학습병행 통합공동훈련센터 담당자와 연락하여 학습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5.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관련 서류(OJT시간표, 훈련시간 및 훈련장소 변경, 기업현장교사 변경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공문)에 대한 공동훈련센터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6.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의 관리 목적으로 운용되는 K-Dual LMS의 학습근로자 훈련내용 작성, 기업현장교사의 피드백 작성 및 평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한다.
7. 학습기업에 대한 컨설팅 진행 시 컨설팅 확인 요청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 (연 2회 이상)
8.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Term Project를 성실히 준비 및 지도한다. (학기당 1개 프로젝트)
9.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학습근로자와 정기면담 진행 및 면담기록 작성을 하고 학습근로자의 신분상 변동 및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학과 주임교수님에게 연락하여 학교와 협의한다.
10. 고용노동부 사업 관련하여 타 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훈련(사업주 훈련, 컨소시엄 훈련 등)에 참여예정인 경우 사전에 공동훈련센터와 협의한다.
11. **일학습병행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 훈련비용 지급방법 변경에 따라 등록금 대비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차액 발생 시 학습근로자가 차액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0호(전부개정 2020.9.29.),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8장 제1절 학습기업 사업주 훈련비 지원 제35조(훈련비 등 지원기준)

20    년    월    일

학 습 근 로 자 : \_\_\_\_\_ (인)

기 업 현 장 교 사 : \_\_\_\_\_ (인)

대 표 이 사 : \_\_\_\_\_ (인)

**한국공학대학교 일학습병행 통합공동훈련센터 귀하**

#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기업현장교사 경력증명서

## 1. 기본인적사항

기업명			
기업현장 교사명	(인)	부서명	
		직위	
담당직무		연락처	직장 :
			HP :
E-mail			

## 2.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 3. 주요 경력

기간	관련내용	비고

## 4. 자격증

취득일	자격명	발행처	비고
2022.00.00	기업현장교사 이수증 (교육기간: 2022.00.00~2022.00.00)		

※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기본과정(2박 3일)에 대한 이수 여부를 반드시 기입 요망  
 - 기업 내 1인 이상은 기본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할 경우 기본  
 과정 이수자를 제외한 기업현장교사는 비고에 '기본과정(이러닝 23H)'으로 표기 요망(최소 2명 이상 기재)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_\_\_\_\_ (직인)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 「일학습병행 대학연계형(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한국공학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회사명: \_\_\_\_\_(이하 "산업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국공학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대학연계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산업체"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습근로자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 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습근로자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컴퓨터전자공학과/ 로봇메카트로닉스공학과	주말	학사	공학사	80/42	2024.03~2028.02 (4년)	교내 및 기업현장

**제 3 조(학습근로자 선발·입학)** ①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② 선발기준은 예비훈련 참가 및 기초능력평가(지필고사, 심층면접)를 통하여 결정한다.

③ 예비훈련 및 기초능력평가(지필고사, 심층면접)는 학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출석 및 응시하여야 하며, 기초능력평가를 통한 입학사정 불합격자는 입학할 수 없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또는 산업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 수업, 원격 수업 등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한국공학대학교의 학사관리에 의하되 계절제 활용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습근로자의 학업 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습근로자가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 8 조(경비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② "산업체"와 학습근로자의 부담비율은 "산업체" 50%, 학습근로자 50%로 한다. 단,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8조에 의거 동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의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동 사업운영 규칙에 따라 정규과정(4년/8학기)동안 지원한다.

③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등)를 "학교"가 청구한 소정의 기간 내에 "학교"에게 제출한다.

④ 설치 운영 기간을 연장할 경우, 학습근로자가 필요 경비의 100%를 부담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되며, 학습근로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된다.

- ②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 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게 관련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습근로자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단, 학습근로자가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반복되는 휴업(휴직), 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학교"는 학습근로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 인사이동으로 현장훈련 및 사업장외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산업체"가 임대차 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습근로자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산업체 및 계약학과 학습근로자는 한국공학대학교의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학습병행제 관련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학습근로자가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대학연계형」 사업 지원 중단 등으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학과명:전자공학부,기계설계공학부)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습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 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 ③ 제2조의 설치 운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학습근로자가 졸업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제13조 1항을 따른다. 이 경우 훈련연장기간은 1년 이하로 제한한다.

**제 14 조(학습근로자의 이직 및 퇴직에 대한 제재조치)** ①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학습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학적은 유지되고 훈련비용은 "학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학교"의 '등록금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되는 훈련비용은 "학교"가 학습근로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습근로자가 "학교"에 지불한다.

- ② "산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 학습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학적과 훈련비용 지원은 유지된다.
- ③ 학습근로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하고 훈련비용은 "학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학교"의 '등록금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④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정에 따른다.

**제 15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학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6 조(비밀유지)** "학교"와 "산업체"는 「일학습병행제 대학연계형」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한국공학대학교

업체명 \_\_\_\_\_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주 소 \_\_\_\_\_

총 장    박 건 수    (직인)

대표자 \_\_\_\_\_ (직인)

## (표준) 훈련근로계약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기업 \_\_\_\_\_(이하 "훈련기업"이라 한다)과 일학습병행에 의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_\_\_\_\_(이하 "학습근로자"라 한다)는 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직업훈련 및 근로계약"(이하 "훈련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제1조[정의]**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훈련계약기간]** ① 훈련(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3월 2일부터 2028년 2월 28일(4년 0개월)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위의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최종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업이 그 사실을 안 날에 훈련(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된다.
- ③ 학습근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훈련(근로)계약기간은 다음 재평가가 있을 때까지 연장되며, 이 경우 1년 또는 연장횟수 총 2회를 넘지 못한다.

**제3조[훈련제공 및 훈련장소]** ①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현장훈련(이하 "현장훈련"이라 한다)과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닌 훈련기업 내·외부의 별도의 시설에서 직무와 관련된 이론 등을 훈련하는 사업장외훈련(이하 "사업장외훈련"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현장훈련의 훈련장소는 \_\_\_\_\_(기업명(훈련장소, 주소)) 로 하고, 사업장외훈련의 훈련장소는 **한국공학대학교**로 한다.

**제4조[훈련기업의 의무]** ①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정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의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고 이를 해당 학습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훈련기업은 훈련을 개시하기 전에 학습근로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훈련근로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훈련기업은 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에게 훈련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그 밖의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훈련을 위해 사업장 밖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평가에 참여할 경우 그 훈련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⑥ 훈련기업은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와 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⑦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⑨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일학습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⑩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평가에 필요한 등록 등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 적시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등록관리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습근로자의 의무]** ① 학습근로자는 훈련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부여된 훈련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학습근로자는 훈련기업이 제공하는 현장훈련과 사업장외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③ 학습근로자는 훈련기업이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훈련근로규칙과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학습근로자는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훈련기업의 사용자 및 기업현장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 학습근로자는 훈련을 위한 기계, 공구 및 그 밖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⑥ 학습근로자는 훈련근로과정에서 알게 된 훈련기업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⑦ 학습근로자가 현장훈련 및 사업장외훈련 기간동안 질병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훈련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지급 및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①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에게 소정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한다. 다만,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에 비례하여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액**

1) 시간급: \_\_\_\_\_ 원

※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할 경우 1) 월급: \_\_\_\_\_ 원으로 기재

2) ○○수당: \_\_\_\_\_ 원

3) ○○수당: \_\_\_\_\_ 원

※ 위 ○○수당은 기본급(시간급액, 월급액)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할 경우 기재

2. 지급일: 예) 매월 ○○일에 지급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

3. 지급기간: 2024. 3. 2. ~ 2028. 2. 28.

4. 지급방법: 예) 직접지급, 학습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등
5. 상여금: 예) 근무기간 6개월 경과 시 ※ 해당 사항 없을 시 삭제 가능
- 1) 지급시기:
- 2) 상여금액: \_\_\_\_\_ 원

- ② 소정의 훈련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훈련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 ③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훈련근로시간과 휴식]** ① 훈련근로시간은 1주 \_\_\_\_\_ 시간, 1일 \_\_\_\_\_ 시간으로 한다(단, 1주간의 훈련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훈련기업의 사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등 사업장외훈련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동 단서 조항 삭제)

- ② 18세 미만인 학습근로자의 훈련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훈련기업과 학습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③ 학습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④ 1일의 훈련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훈련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 ⑤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및 훈련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 ⑥ 훈련기업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학습근로자에게 현장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대제를 운영하는 훈련기업의 경우 또는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 등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훈련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학습근로자의 동의(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습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외훈련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훈련기업과 학습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훈련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외훈련이 훈련기업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훈련근로시간이 1주간에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제8조[징계]** ①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훈련근로계약, 훈련취업규칙,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학습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칙이 없는 경우 훈련기업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